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6월 30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7월 11일

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이 기금융자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대보증인을
“구미시에 거주하는 2인” → “1명” 으로 변경(안 제9조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 대해 융자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 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연대보증인을 “구미시에 거주하는 2인” 에서 거주지 제한없이 “1명” 으로 완화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조건 완화로 대출이 용이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
- 융자신청 조건 완화로 인하여 채권확보 및 융자금 회수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